

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(강혜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7. 30.

발 의 자 : 강혜경, 박경흠, 문희성
신성봉, 권태호, 안영호
박채연

1. 제정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양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지원사업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중복지원 금지(안 제4조)
- 다. 포상(안 제5조)

3. 근거법규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(재정)

4. 제정조례안 : “따로 붙임”

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양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지역회로 조직되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2.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
3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5조(포상) 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재향경우회원에 대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